

# 【학교체육위원회 규정】

## 제1조(설치 근거 및 명칭)

본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36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학교체육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칭함)라 칭한다.

## 제2조(목적)

본 위원회는 검도가 학교체육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급, 확장시키고, 검도를 통해 학생들의 심신수양에 기여하며, 나아가서는 미래의 검도 주역을 육성하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.

## 제3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, 심의한다.

1. 학교체육수업으로써 검도의 활성화
2. 학교체육수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검도의 보급 및 확대
3. 학교스포츠클럽 검도의 보급 및 확대
4. 검도를 통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건강한 심신 유지
5. 기타 학교체육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

## 제4조(조직)

1.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.
2.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,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## 제 5 조(운영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4.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5.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## 제 6 조(시행세칙)

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행세칙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 <2013. 11 . 14 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